

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

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』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(1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에 의한 공시 [소규모펀드(1년)여부 공시 대상] : 해당없음

(2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5호에 의한 공시 [소규모펀드(1개월)여부 공시 대상] :

보고서 코드	회사 코드	펀드명1(운용펀드)	펀드명2(투자자펀드)	펀드코드 (운용펀드)	펀드코드 (투자자펀드)	발생일자	비율산정 대상구분	오류 내역
GSMA	A01018	신한BNPP베트남증권모투자신탁[주식]	신한BNP동남아시아증권자투자신탁제1호(H)[주식](종류C2)	K55210BG7689	KR5210996082	20180806	산정대상	

(3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[이행계획 공시] : 해당없음

(4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 [이행실적 공시] : 해당없음

(5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 [이행실적 공시(세부)] : 해당없음

(6) 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 [소규모펀드 비율 공시]

보고서코드	회사코드	공모추가형 펀드수(운용펀드기준)				소규모 펀드수				소규모펀드비율 (=H/D)	제출기준일
		전체 (A)	부실자산 펀드수	(구)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개인연금펀드	차감 계 (D=A-B-C)	전체 (A)	부실자산펀드 중 소규모 펀드(F)	(구)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개인연금펀드 중 소규모펀드	차감 계 (H=E-F-G)		



신한BNP파리바
자산운용



			(B)	(C)				(G)			
GSMC	A01018	102	14	0	88	18	14	0	4	4.5	20180831

* 위 대상 집합투자기구는 법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라며(이행계획 공시, 이행실적 공시, 소규모펀드 비율 제외),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또는 해당 판매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